

『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1995.1.1)되었으나,
- 상위법 근거 없는 임의조례로 「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의 적용으로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- 기 타 :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」은,
 - 현행 「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으로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「구미시농공지구 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」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